

행정안전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제2조의2)

지자체에서 투자우선순위 검토시 고려할 사항, 재난안전사업 범위를 규정함.

나. 중대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중대본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내용에 중대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2. 과거 피해 현황, 현재 위험 수준, 향후 위험 전망
3. 재난·사고 예방 등 사업의 기대 효과
4. 재정사업 평가 결과 또는 사업 실적·성과
5. 사업 추진주체의 투자 여건 및 의견
6. 해당 재난·사고 분야 민간전문가 의견
7.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준”을 “구성 및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대책본부”를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u> <u>2. 과거 피해 현황, 현재 위험 수준, 향후 위험 전망</u> <u>3. 재난·사고 예방 등 사업의 기대 효과</u> <u>4. 재정사업 평가 결과 또는 사업 실적·성과</u> <u>5. 사업 추진주체의 투자 여건 및 의견</u> <u>6. 해당 재난·사고 분야 민간 전문가 의견</u> <u>7.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u> <u>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u>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운영 기준</u>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u>중앙대책본부</u>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 7. (생략) ②·③ (생략)	<u>따른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u> 2. <u>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u> 3. <u>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u>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 ----- ----- ----- ----- ----- <u>구성</u> <u>및 운영기준</u>-----. 1. <u>중앙대책본부 구성 및</u> ----- -----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